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성별임금 포함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7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완

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임직원의 성별 고용인원 및 임금 현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임원 및 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고용인원 및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 이 경우 직원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사업보고서는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의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주로 회사의 사업, 소유관계, 재무적 사항 등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금융용어사전, 2025. 5. 30. 조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던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으로, 그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³⁾

[표 1] 현행법령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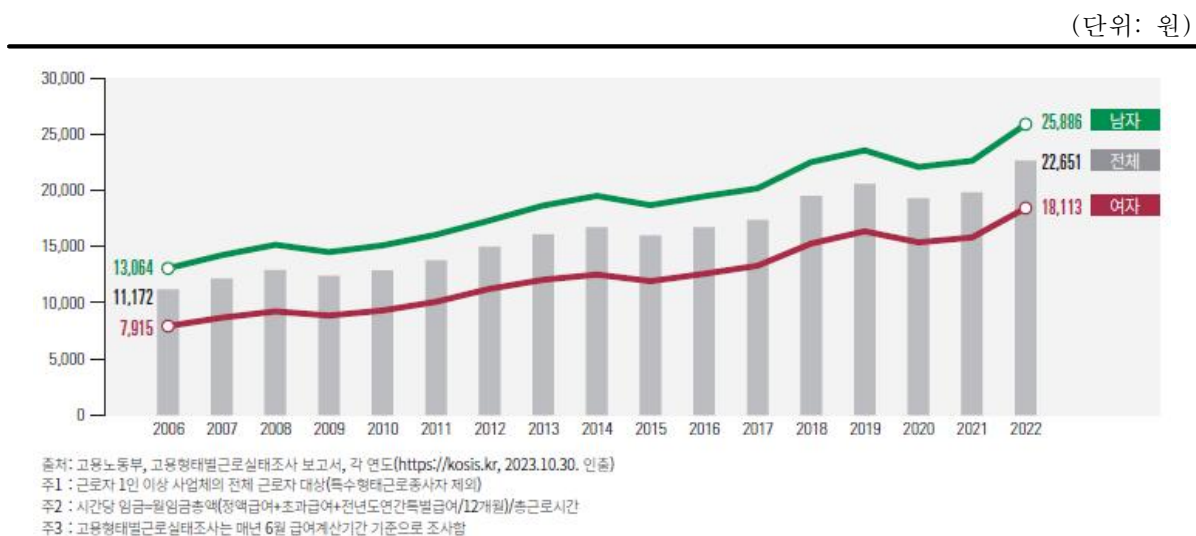
자본시장법 (§159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168③)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3①)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주식매수선택권 포함) 3.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방법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방법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금융위 고시사항	1. 사업의 내용 2.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변경상황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다. 우발채무 등 라. 제재현황 마.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사.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아. 자금의 사용내역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 충족 여부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관리업체 지정·취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카. 녹색기술·녹색산업 인증, 녹색기업 지정 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전환·상각 사유가 되는 가격·지표·단위·지수 현황 파. 파견근로자 현황 하.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회계감사인 논의 거. 자기주식 보유 관련 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목적, 추가 취득계획, 소각·처분계획

- 3)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허위기재·미기재 시 「자본시장법」 상 제재는 다음과 같음.
- 행정조치 (§164):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경고·주의 등
 - 손해배상책임 (§162):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보고서 관련 제출인·이사·작성자·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 등
 - 과징금 (§429): 전년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 (§444, §446):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제출)

□ 한편, 개정안은 임원 및 직원의 성별 고용인원 및 성별 임금 현황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의 경우 1만 8,113원, 남성의 경우 2만 5,886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성별 임금격차⁴⁾는 35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31.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1%의 2.6배에 달하고 있는데,⁵⁾
-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그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성별 고용인원 및 임금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표 2] 성별 시간당 임금(2006~2022)



(자료: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2024. 3.)

4) 남성 중위임금 대비 남성과 여성 중위임금의 차이
 5)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2024. 3., p.68.

[표 3] OECD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2024. 3.)

□ 다만,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업에게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⁶⁾이 함께 발의되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⁷⁾하고 있는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71호, 2025. 3. 21.)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안”은 근로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는 성별 고용 현황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사업보고서와 고용현황 공시 모두에 성별 고용인원 및 임금 현황을 추가하여야 하므로 중복공시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는바, 두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①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의 사업보고서 공시제도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형태 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고용현황 공시제도 각각의 도입목적, ②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③ 새로운 규제의 신설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과건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표 4] 사업보고서 공시와 고용현황 공시 비교

구 분	사업보고서	고용현황 공시
법적근거	○ 「 <u>자본시장법</u> 」 §159 등	○ 「 <u>고용정책 기본법</u> 」 §15의6 등
목적	○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통한 <u>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u>	○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u>사업주의 자율적 개선 유인</u>
대상	○ <u>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u> - 주권상장법인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특정증권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 <u>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u>
시기·방법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고용정보시스템에 공시
공시내용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u>주로 사업, 소유관계, 재무적 사항</u>	○ 성별에 따라 <u>근로자의 고용형태*</u> 현황을 작성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재처분	○ <u>과징금</u> : 전년도 일평균거래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 <u>형사처벌</u> : - 중요사항 거짓기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미제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u>없음</u> - 다만, <u>개정안에서</u> 300만원 이하의 <u>과태료</u> 를 신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목적의 상세한 통계는 실질적인 관리·집행이 가능하도록 고용현황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해관계자인 **상장회사협의회**는 ① 투자자 보호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 ②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사업보고서를 통한 성별 고용인원 및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